

부산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나664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교훈

변론 종결 2020. 9. 16.

판결 선고 2020. 10. 21.

제 1 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1. 27. 선고 2019가소6146 판결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전무이사 D은 2000년경부터 알던 사이 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9. 피고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E)로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5.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려다 착오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D에게 중국회사인 F을 소개하여 C와 F 사이에 기술지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사실 F이 C에게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D은 F이 C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고 개인 돈으로 회사에 보상하기로 하였으니 원고도 도의적 책임으로 C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금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D의 기만에 의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D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15조에 본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직접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의 송금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보관자로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D의 위 나.항 기재 불법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3. 판단

가. 착오 송금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이 피고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E)를 지정해 주자 위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금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기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원고 주장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D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D이 원고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단순히 D에게 지급받을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원고와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대리관계 부존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대리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여야 하는데, 피고가 D의 부탁으로 그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D의 대리인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금원의 수령을 준법률행위로 보아 피고를 D의 대리인으로 보더라도 금전의 수령과 같은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1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D의 불법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오영두, 판사 김석수, 판사 류승우